

현 행	개 정 (안)
제 19조(생략) 부 칙	(현행과 같음) 부 칙
제 1조 ~ 제 3조(생략)	(현행과 같음)
제 4조(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을 받은 것으로 본다.	(삭 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9. 9. 20.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7월 13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9년 7월 14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66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1999년 9월 14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가. 개정이유

- '99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 【행정자치부 운영 11250 - 668('98. 12. 16)호 및 서울 시조직 5090 - 1226('98. 12. 31)】에 의한 「'99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지침』에 따라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근거가 없거나 중복된 규정에 대하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가 필요하여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정화시설의 야간청소 고시 일부 삭제(안 제6조)
- 가축사육의 제한 삭제(안 제10조)
-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일부 규정 삭제(안 제12조)
- 수수료의 가산금 삭제(안 제14조)
- 수수료의 강제 징수 삭제(안 제15조)
- 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사항 일부 규정 삭제(안 제18조)
- 분뇨관련영업 대행계약기준 일부 삭제(안 제11조제2안 관련 별표1)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유재한)

'99년도 행정자치부로부터 규제정비종합계획이 하달되어 자치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내용 일부가 상위법(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근거가 없거나 중

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가. 제6조(정화시설의 야간청소)제1항의 내용중 야간청소를 실시할 경우 경찰청 도로교통 고시 제1호 해당지역의 정화조 청소를 실시하기 위하여 야간 수거를 하여야 하나, 별도 차량운행허가를 받았을 경우는 야간이 아니더라도 청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며,

나. 제10조(가축사육의 제한 등)를 삭제하는 것은 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가 상세하게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제개혁차원에서 삭제하는 것이며,

다. 제12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제2항의 개정내용은 야간에 청소하는 요금은 별표 2에서 정한 정화조 수수료에 야간 할증료를 가산·징수하는 것으로 이는 경찰청 고시 지역 내에서 해당되는 것이나, 타 지역 시민이 야간 청소요구가 있을 경우 경찰청 고시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도 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며,

라. 제14조(수수료의 가산금)와 제15조(수수료의 강제징수)의 내용은 과거 청소를 구직영으로 수집할 때에 필요하여 규정한 내용이었으나, 지금은 대행업체에서 수거·징수하고 있으므로 굳이 구조례로 규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이고,

마. 제18조(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제1항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환경부령(법률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어 삭제하게 되는 것이며, 제2항은 법률 제44조(장부의 기록·보존)에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을 삭제하고 다만 정화조 청소업자는 청소실적과 수수료의 징수실적을 매월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임.

끝으로 별표1의 분뇨관련영업 대행계약의 기준(조례 제11조제2항 관련)의 기술능력·자본금·사무실·차량의 보유 등은 법 시행규칙 별표14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되어 삭제하는 것이며, 기타 사항란에 종사원 목록시설은 대행업자가 종사자들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필수사항이므로 우리 구 조례로까지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어 삭제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4.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행정자치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거나 중복된 규정에 대하여 규제개혁차원에서 개정하려는 본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종사원 목록시설은 후생복리를 위하여 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이므로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안 제11조제2항과 관련한 별표1의 “분뇨관련영업대행계약기준” 기타에서 “종사원 목록시설”은 삭제한다는 내용

5.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 안 번 호	관 련 73 호
------------	-------------

제안년월일 : 1999. 9. 14.
제안자 : 시종덕 의원 외 1인

1. 수정(폐지)이유

- 행정자치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근거가 없거나 중복된 규정에 대하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하려는 본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종사원 목욕시설은 후생복리를 위하여 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이므로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안 제11조제2항과 관련한 별표1의 “분뇨관련영업대행계약기준” 기타에서 “종사원 목욕시설”은 삭제한다는 내용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1조제2항과 관련한 별표1의 분뇨관련영업대행계약기준 기타 난에서 “종사원 목욕시설”을 삭제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대비표

[별표 1]

분뇨관련 영업대행 계약의 기준(제11조제2항 관련)

구 분	현 행	개 정	수 정 (안)
	분뇨수집·운반업	분뇨수집·운반업	분뇨수집·운반업
기술능력	분뇨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인 이상	(삭 제)	(개정안과 같음)
자본금	- 법인 : 5천만원 이상 - 개인 : 재산평가액 1억원 이상	(삭 제)	(개정안과 같음)
사무실	전용면적 : 15㎡ 이상	(삭 제)	(개정안과 같음)
차량	흡인식 차량의 합계 : 3,600ℓ 이상 (탈취시설 부착)	(삭 제)	(개정안과 같음)
차고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최저 보유차고면적(대당) - 5톤 미만 : 13㎡ - 5톤 이상 ~ 10톤 미만 : ㎡ - 10톤 이상 : 36㎡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신고용 전화	2대 이상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기타	- 소독조 1조 이상 - 종사원 목욕시설	(현행과 같음)	-소독조 1조 이상 (삭 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3
----------	----

제출년월일 : 1999. 7. 13.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 이유

'99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행정자치부 운영 11250 - 668('98. 12. 16)호 및 서울시조직 5090 - 1226('98. 12. 31)】에 의한 「'99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지침」에 따라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근거가 없거나 중복된 규정에 대하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가 필요하여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가. 정화시설의 야간청소 고시 일부 삭제(안 제6조)
- 나. 가축사육의 제한 삭제(안 제10조)
- 다.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일부 규정 삭제(안 제12조)
- 라. 수수료의 가산금 삭제(안 제14조)

- 마. 수수료의 강제 징수 삭제(안 제15조)
- 바. 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사항 일부 규정 삭제(안 제18조)
- 사. 분뇨관련영업 대행계약기준 일부 삭제(안 제11조제2항 관련 별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동 조례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 다. 합의사항 : 이견 없음
- 라.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구청장은 서울시 경찰청 도로교통고시 제1호 해당지역의 정화시설에 대하여는 야간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별도 차량운행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과 관련한 [별표1] “분뇨관련영업 대행계약의 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야간 청소요금은 별표2에서 정한 정화조 청소수수료에 야간 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하며 대상지역을 경찰청 고시지역에 한한다. 다만, 시민의 야간 청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기타 지역에서도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정화조 청소업자로 하여금 청소실적과 수수료의 징수실적을 매월 보고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14조(수수료의 가산금)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삭 제)
제 15조(수수료의 강제징수) 제12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가산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세 체납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삭 제)
제 16조 ~ 제 17조(생략)	(현행과 같음)
제 18조(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정화조 청소업자로 하여금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실시할 경우 청소 직후 그 정화시설이 시행규칙 제15조, 제18조, 제21조 및 제53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정화시설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한 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법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정화조 청소업자로 하여금 청소작업 일지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실적과 수수료의 징수실적을 매월 보고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제 18조(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 ①삭 제 ②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정화조 청소업자로 하여금 청소실적과 수수료의 징수실적을 매월 보고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제 19조 ~ 제 20조(생략)	(현행과 같음)

분뇨관련영업 대행계약의 기준(제11조제2항 관련)

(별표1)

구 분	분뇨수집·운반업	정화조 청소업
차 량		오니처분용 화물차 1대 이상
차 고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최저보유 차고 면적 (대당) - 5톤 미만 : $13m^2$ - 5톤 이상 ~ 10톤 미만 : $26m^2$ - 10톤 이상 : $36m^2$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최저보유 차고 면적(대당) - 5톤 미만 : $13m^2$ - 5톤 이상 ~ 10톤 미만 : $26m^2$ - 10톤 이상 : $36m^2$
신고용 전 화	2대 이상	2대 이상
기 타	- 소독조 1조 이상 - 종사원 목욕시설	- 소독조 1조 이상 - 종사원 목욕시설